|  |  |  |
| --- | --- | --- |
| **국가세무총국의 비거주기업 소득세 원천징수 유관 문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 2017년 제37호    <국가세무총국의 세무시스템 ‘방관복’ 개혁을 한 층 더 심화하고 세수환경을 최적화하는 데 관한 약간의 의견> (세총발[2017]101호)의 요구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이하 ‘기업소득세법’) 및 그에 따르는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및 그에 따르는 실시세칙의 유관 규정에 근거하여 비거주기업 소득세 원천징수 관련 문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기업소득세법 제37조, 제39조와 제40조 규정에 의거하여, 비거주자 기업소득세 원천징수 관련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서 본 공고를 적용한다. 기업소득세법 제38조 규정의 집행과 관련된 사항은 본 공고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104조에서 규정한 지급인 스스로 대리인을 위탁하거나 혹은 기타 제3자를 지정하여 관련 비용을 대리 지급하는 경우, 또는 보증계약서나 법률규정 등 원인으로 제3자 보증인 또는 담보인이 관련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여전히 위탁인, 지정인 혹은 피보증인 및 피담보인이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  3. 기업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규정한 양도재산소득은 양도지분 등 권익성 투자자산(이하 ‘지분’)소득을 포함한다. 지분양도 수입은 지분순가치를 차감한 후 잔액을 지분양도 소득의 과세소득액으로 한다.  지분양도 수입은 지분 양도인이 지분을 양도하여 수취한 대가를 가리키며, 화폐형식과 비화폐형식의 각종 수입을 포함한다.  지분순가치는 해당 지분을 취득하는 과세기초를 가리킨다. 지분의 과세기초는 지분 양도인이 출자 투자 시 중국 거주기업에 실제 지급한 출자 원가 혹은 해당 지분을 매수할 때 이 지분의 원래 양도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지분양수 원가이다. 지분이 보유기간 중 가치가 하락하거나 증가하여 국무원 재정, 세무 주관부문 규정에 따라 손익이 확인되는 경우, 지분순가치는 상응하는 조정을 하여야 한다. 기업이 지분양도소득 계산 시 피투자기업의 미분배이윤 등 주주가 남겨 둔 수익 중 해당지분의 분배가능 금액을 공제해서는 아니 된다.  여러 차례에 걸쳐 투자 혹은 매수한 동일 항목의 지분을 일부 양도한 경우, 해당 지분 전체 원가 중에서 양도비율에 따라 계산하여 지분양도에 대응하는 원가를 확정한다.  4.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하였거나 기한만료로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인민폐 이외의 화폐로 지급하거나 가격을 계산하는 경우 각각 아래의 정황에 따라 외국화폐로 환산한다.  4.1 원천징수의무자가 기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경우, 원천징수의무 발생일의 인민폐 중간환율에 따라 인민폐로 환산하고, 비거주기업의 과세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의무 발생일은 실제로 해당 금액을 지급한 날이거나 기한만료로 지급해야 하는 날이다.  4.2 비거주기업이 주관 세무기관에서 기한 내 납부를 청구하기 전에 스스로 신고하여 원천징수해야 할 세금을 납부한 경우, 세수납부서 작성 1일 전의 인민폐 환율 중간값에 따라 인민폐로 환산하여 비거주기업의 납세해야 할 소득액을 계산해야 한다.  4.3 주관 세무기관이 수입을 취득한 비거주기업에 원천징수세금의 납부를 청구한 경우, 세금납부기한 결정 하루 전의 인민폐 환율 중간값에 따라 인민폐로 환산하여, 비거주기업의 과세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5. 재산양도 수입 또는 순재산을 인민폐 이외의 화폐로 가격을 계산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납세인 스스로 신고하여 세금 납부 및 주관 세무기관이 기한 내 세금 납부를 청구하는 세 가지 정황으로 구분하는데, 우선 비인민폐 가격 계산 항목의 금액을 본 공고 제4조 규정에 따라 인민폐로 환산한 후 다시 기업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비거주기업의 재산양도 소득의 과세소득액을 계산한다.  순재산 또는 재산양도 수익의 가격계산 화폐는 재산을 취득 또는 양도 시 실제 지급하였거나 수취한 화폐로 가격을 계산하여 확정한다. 원래 가격을 계산한 화폐가 유통이 정지되고 신종 화폐가 유통되기 시작한 경우, 신구 화폐시장 전환비율에 따라 신종 화폐로 전환한 후 계산한다.  6. 원천징수의무자가 비거주기업과 기업소득세법 제3조 제3항에서 규정한 소득 관련 업무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실제로 납부할 세금을 부담한다고 약정한 경우, 비거주기업이 취득한 세금불포함 소득을 세금포함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하고 원천징수해야 할 세금을 완납해야 한다.  7. 원천징수의무자는 스스로 원천징수의무 발생일부터 7일내 원천징수의무자 소재지 주관 세무기관에 신고하고 원천징수세금을 완납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한이 도래한세금의 미지급 상황이 발생하면 <국가세무총국의 비거주자 기업소득세 관리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공고 2011년 제24호) 제1조 규정에 따라 세무처리를 하여야 한다.  비거주기업이 취득한 원천징수소득이 지분배당금, 주식배당금 등 권익성 투자수익인 경우, 관련된 납부할 세금의 원천징수의무 발생일을 지분배당금, 주식배당금 등 권익성 투자수익의 실제 지급일로 한다.  비거주기업이 분할수금 방식을 채택하여 원천징수소득세와 동일한 사항의 재산양도소득을 취득한 경우, 그 분할수취 금액을 회수이전의 투자재산 원가로 간주할 수 있고, 원가 전부를 회수한 후 징수해야 할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8.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세금 신고 납부 시 <중화인민공화국 원천징수 기업소득세 보고표>를 기입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세금 신고 납부 전에 유관 신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이미 제출한 경우, 신고 시에 중복 제출하지 아니 한다.  9. 기업소득세 제37조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하는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적으로 원천징수하지 않았거나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소득을 취득한 비거주기업은 기업소득세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소득발생지 주관 세무기관에 원천징수하지 않은 세금을 신고 납부하여야 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원천징수 기업소득세 보고표>를 기입하여야 한다.  비거주기업이 기업소득세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세금을 신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 세무기관은 기한 내 납부를 청구할 수 있다. 비거주기업은 세무기관에서 확정한 기한 내에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비거주기업이 세무기관에서 기한 내 납부를 청구하기 전에 스스로 세금을 신고 납부한 경우, 이미 기한내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비거주기업이 취득한 동일 항목의 소득이 중국 경내에서 다수의 소득발생지가 있어 여러 세무기관이 관련되어, 기업소득세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스스로 원천징수하지 않은 세금을 신고하여 납부할 때에는 한 개 지역을 선택하여 본 공고 제9조에서 규정한 납세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신고를 수리하는 지역의 주관 세무기관은 신고 수리 후 5업무일 내에 원천징수의무자 소재지와 동일한 항목의 기타 소득발생지 주관 세무기관에 <비거주기업 세무사항 연락문>(별첨 참고)를 발송하여, 비거주기업 세무관련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1. 주관 세무기관은 납세인, 원천징수의무자와 기타 상황을 알고 있는 관련 측에 원천징수의무 세금과 관련된 계약서와 기타 관련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세금 대리공제 대리납부 장부와 계약자료 파일을 구비하여야 하고, 비거주자 기업소득세 원천징수 상황을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12. 기업소득세법 제37조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금을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지 않을 경우, 원천징수의무인 소재지 주관 세무기관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23조 규정에 의거하여 원천징수의무인에게 세금을 보충 공제하도록 명령하고, 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인의 책임을 추궁한다. 납세인에게 세금 추징이 필요한 경우, 소득발생지 세무기관이 법에 의거하여 집행한다.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와 소득발생지가 불일치 하는 경우, 세금추징을 책임지는 소득발생지 주관 세무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 주관 세무기관을 통하여 관련 상황을 조사 확인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 주관 세무기관은 미납세금을 법에 따라 원천징수하지 않은 것을 확정한 날로부터 5업무일 이내에, 소득발생지 주관 세무기관에 <비거주기업 세무사항 연락문>을 발송하여 비거주기업의 세무관련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3. 주관 세무기관은 본 공고 제12조 규정에 따라 비거주기업의 납부해야 할 세금을 추징할 때 아래의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13.1 해당 비거주기업에 기한 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신고하여 납부할 것을 명령한다.  13.2 해당 비거주기업의 중국 경내 기타 수입 항목 및 그에 따르는 지급인의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조사한다. 해당 기타 항목의 지급인에게 <세무사항 통지서>를 보내고, 법정절차에 따라 비거주기업 기타 수입 항목 금액에서 미납세금 및 미납체납금을 추징한다.  기타 항목 지급인의 소재지와 세금미공제 소득발생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기타 항목 지급인의 소재지 주관 세무기관은 협조해 주어야 한다.  14. 본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할 세금을 이미 원천징수의무자가 실제로 지급하였지만 아직 규정된 기한 내에 원천징수세금을 완납하지 않았고, 동시에 아래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 이미 세금을 공제하였지만 완납하지 않은 상황으로 간주하여 유관 법률, 및 행정법규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4.1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취인에게 세금을 기 원천징수한 사실을 확실히 고지한 경우  14.2 이미 재무회계 처리에서 미납세금으로 단독 열거하여 표시한 경우  14.3 이미 납세신고 중에 단독으로 공제하였거나 공제해야 할 세금을 단독으로 상각한 경우  14.4 기타 증거로 이미 세금을 공제한 사실이 증명된 경우    위 조항에서 규정한 상황 외에 본 공고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금을 규정기한 내 완납 입고하지 않은 경우 모두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유관 법률 및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5. 본 공고가 세수협정 및 그에 따른 관련 규정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 세수협정 및 그에 따른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16. 원천징수의무자 소재지 주관 세무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 소득세 주관 세무기관이다.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7조 규정과 다른 소득인 경우, 소득발생지의 주관 세무기관은 아래 원칙에 따라 확정한다.  16.1 부동산 양도소득인 경우 부동산 소재지의 국세기관으로 한다.  16.2 권익성 투자자산 양도소득인 경우 피투자기업의 소득세 주관 세무기관으로 한다.  16.3 주식배당금, 초과배당금 등 권익성 투자소득인 경우 분배소득기업의 소득세 주관 세무기관으로 한다.  16.4 이자소득, 임대소득, 특허권사용료 소득인 경우 소득을 부담하여 지급하는 단위 혹은 개인의 소득세 주관 세무기관으로 한다.  17. 본 공고는 2017년 12월 1일자로 시행한다. 본 공고 제7조 제2항과 제3항, 제9조 제2항은 본 공고 시행 전 이미 발생하였으나 처리하지 않은 소득에 적용할 수 있다. 아래 열거한 규정은 2017년 12월 1일자로 폐지한다.  17.1. 《국가세무총국의 <비거주자 기업소득세 원천징수 관리 잠행방법> 인쇄발부에 관한 통지》 (국세발[2009]3호).  17.2 <국가세무총국의 비거주자 세수관리 업무를 한 층 더 강화하기 위한 통지> (국세발[2009]32호) 제2조 제(3)항 중의 이하 기술:  ‘각 지역은 《국가세무총국의 <비거주자 기업소득세 원천징수 관리 잠행방법> 인쇄발부에 관한 통지》(국세발[2009]3호)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 등기와 계약서 비안 제도를 구체화하 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적시에 정확하게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관리장부와 관리 서류를 만들고 탈세한 세금을 추징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17.3 <국가세무총국의 세종징수관리를 강화하여 탈세를 방지하고 증수하는 것에 관한 몇 가지 의견>(국세발[2009]85호) 제4조 제(2)항 제3목 중 이하 기술:  ‘《국가세무총국의 <비거주자 기업소득세 원천징수 관리 잠행방법> 인쇄발부에 관한 통지》 (국세발[2009]3호)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 등기와 계약서 비안 제도를 구체화 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적시에 정확하게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관리장부와 관리서류를 만들도록 지도해야 한다.’  17.4 <국가세무총국의 비거주기업 주식양도 소득의 기업소득세 관리를 강화하는 것에 관한 통지>(국세함[2009]698호).  17.5 《국가세무총국의 <비거주기업 세수협동 관리방법(잠행)> 인쇄발부에 관한 통지》 (국세발[2010]119호) 제9조.  17.6 《국가세무총국의 <기업구조조정 업무 기업소득세 관리방법> 발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0년 제4호) 제36조.  17.7 <국가세무총국의 비거주기업 소득세 관리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1년 제24호) 제5조와 제6조.  17.8《국가세무총국의 <비거주기업의 국제운송 업무 세수관리 잠행방법> 발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4년 제37호) 제2조 제3항 중 이하 기술:  ‘《국가세무총국의 <비거주자 기업소득세 원천징수 관리 잠행방법> 인쇄발부에 관한 통지》 (국세발[2009]3호)’.  17.9<국가세무총국의 비거주기업의 간접 양도재산 소득세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5년 제7호) 제8조 제2항.  이에 특별히 공고한다.  별첨: 비거주기업 세무사항 연락문  국가세무총국  2017년 10월 17일 |  | **国家税务总局关于非居民企业所得税源泉扣缴有关问题的公告**  国家税务总局公告2017年第37号  按照《国家税务总局关于进一步深化税务系统“放管服”改革优化税收环境的若干意见》（税总发〔2017〕101号）的安排，根据《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以下称“企业所得税法”）及其实施条例、《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及其实施细则的有关规定，现就非居民企业所得税源泉扣缴有关问题公告如下：  　　一、依照企业所得税法第三十七条、第三十九条和第四十条规定办理非居民企业所得税源泉扣缴相关事项，适用本公告。与执行企业所得税法第三十八条规定相关的事项不适用本公告。  二、企业所得税法实施条例第一百零四条规定的支付人自行委托代理人或指定其他第三方代为支付相关款项，或者因担保合同或法律规定等原因由第三方保证人或担保人支付相关款项的，仍由委托人、指定人或被保证人、被担保人承担扣缴义务。  三、企业所得税法第十九条第二项规定的转让财产所得包含转让股权等权益性投资资产（以下称“股权”）所得。股权转让收入减除股权净值后的余额为股权转让所得应纳税所得额。  股权转让收入是指股权转让人转让股权所收取的对价，包括货币形式和非货币形式的各种收入。  股权净值是指取得该股权的计税基础。股权的计税基础是股权转让人投资入股时向中国居民企业实际支付的出资成本，或购买该项股权时向该股权的原转让人实际支付的股权受让成本。股权在持有期间发生减值或者增值，按照国务院财政、税务主管部门规定可以确认损益的，股权净值应进行相应调整。企业在计算股权转让所得时，不得扣除被投资企业未分配利润等股东留存收益中按该项股权所可能分配的金额。  多次投资或收购的同项股权被部分转让的，从该项股权全部成本中按照转让比例计算确定被转让股权对应的成本。  四、扣缴义务人支付或者到期应支付的款项以人民币以外的货币支付或计价的，分别按以下情形进行外币折算：  　　（一）扣缴义务人扣缴企业所得税的，应当按照扣缴义务发生之日人民币汇率中间价折合成人民币，计算非居民企业应纳税所得额。扣缴义务发生之日为相关款项实际支付或者到期应支付之日。  （二）取得收入的非居民企业在主管税务机关责令限期缴纳税款前自行申报缴纳应源泉扣缴税款的，应当按照填开税收缴款书之日前一日人民币汇率中间价折合成人民币，计算非居民企业应纳税所得额。  （三）主管税务机关责令取得收入的非居民企业限期缴纳应源泉扣缴税款的，应当按照主管税务机关作出限期缴税决定之日前一日人民币汇率中间价折合成人民币，计算非居民企业应纳税所得额。  五、财产转让收入或财产净值以人民币以外的货币计价的，分扣缴义务人扣缴税款、纳税人自行申报缴纳税款和主管税务机关责令限期缴纳税款三种情形，先将以非人民币计价项目金额比照本公告第四条规定折合成人民币金额；再按企业所得税法第十九条第二项及相关规定计算非居民企业财产转让所得应纳税所得额。  财产净值或财产转让收入的计价货币按照取得或转让财产时实际支付或收取的计价币种确定。原计价币种停止流通并启用新币种的，按照新旧货币市场转换比例转换为新币种后进行计算。  六、扣缴义务人与非居民企业签订与企业所得税法第三条第三款规定的所得有关的业务合同时，凡合同中约定由扣缴义务人实际承担应纳税款的，应将非居民企业取得的不含税所得换算为含税所得计算并解缴应扣税款。  七、扣缴义务人应当自扣缴义务发生之日起7日内向扣缴义务人所在地主管税务机关申报和解缴代扣税款。扣缴义务人发生到期应支付而未支付情形，应按照《国家税务总局关于非居民企业所得税管理若干问题的公告》（国家税务总局公告2011年第24号）第一条规定进行税务处理。  非居民企业取得应源泉扣缴的所得为股息、红利等权益性投资收益的，相关应纳税款扣缴义务发生之日为股息、红利等权益性投资收益实际支付之日。  非居民企业采取分期收款方式取得应源泉扣缴所得税的同一项转让财产所得的，其分期收取的款项可先视为收回以前投资财产的成本，待成本全部收回后，再计算并扣缴应扣税款。  　　八、扣缴义务人在申报和解缴应扣税款时，应填报《中华人民共和国扣缴企业所得税报告表》。  扣缴义务人可以在申报和解缴应扣税款前报送有关申报资料；已经报送的，在申报时不再重复报送。  九、按照企业所得税法第三十七条规定应当扣缴的所得税，扣缴义务人未依法扣缴或者无法履行扣缴义务的，取得所得的非居民企业应当按照企业所得税法第三十九条规定，向所得发生地主管税务机关申报缴纳未扣缴税款，并填报《中华人民共和国扣缴企业所得税报告表》。  非居民企业未按照企业所得税法第三十九条规定申报缴纳税款的，税务机关可以责令限期缴纳，非居民企业应当按照税务机关确定的期限申报缴纳税款；非居民企业在税务机关责令限期缴纳前自行申报缴纳税款的，视为已按期缴纳税款。  十、非居民企业取得的同一项所得在境内存在多个所得发生地，涉及多个主管税务机关的，在按照企业所得税法第三十九条规定自行申报缴纳未扣缴税款时，可以选择一地办理本公告第九条规定的申报缴税事宜。受理申报地主管税务机关应在受理申报后5个工作日内，向扣缴义务人所在地和同一项所得其他发生地主管税务机关发送《非居民企业税务事项联络函》（见附件），告知非居民企业涉税事项。  十一、主管税务机关可以要求纳税人、扣缴义务人和其他知晓情况的相关方提供与应扣缴税款有关的合同和其他相关资料。扣缴义务人应当设立代扣代缴税款账簿和合同资料档案，准确记录非居民企业所得税扣缴情况。  十二、按照企业所得税法第三十七条规定应当扣缴的税款，扣缴义务人应扣未扣的，由扣缴义务人所在地主管税务机关依照《中华人民共和国行政处罚法》第二十三条规定责令扣缴义务人补扣税款，并依法追究扣缴义务人责任；需要向纳税人追缴税款的，由所得发生地主管税务机关依法执行。扣缴义务人所在地与所得发生地不一致的，负责追缴税款的所得发生地主管税务机关应通过扣缴义务人所在地主管税务机关核实有关情况；扣缴义务人所在地主管税务机关应当自确定应纳税款未依法扣缴之日起5个工作日内，向所得发生地主管税务机关发送《非居民企业税务事项联络函》，告知非居民企业涉税事项。  十三、主管税务机关在按照本公告第十二条规定追缴非居民企业应纳税款时，可以采取以下措施:  　　（一）责令该非居民企业限期申报缴纳应纳税款。  （二）收集、查实该非居民企业在中国境内其他收入项目及其支付人的相关信息，并向该其他项目支付人发出《税务事项通知书》，从该非居民企业其他收入项目款项中依照法定程序追缴欠缴税款及应缴的滞纳金。  其他项目支付人所在地与未扣税所得发生地不一致的，其他项目支付人所在地主管税务机关应给予配合和协助。  十四、按照本公告规定应当源泉扣缴税款的款项已经由扣缴义务人实际支付，但未在规定的期限内解缴应扣税款，并具有以下情形之一的，应作为税款已扣但未解缴情形，按照有关法律、行政法规规定处理：  　　（一）扣缴义务人已明确告知收款人已代扣税款的；  　　（二）已在财务会计处理中单独列示应扣税款的；  　　（三）已在其纳税申报中单独扣除或开始单独摊销扣除应扣税款的；  　　（四）其他证据证明已代扣税款的。  除上款规定情形外，按本公告规定应该源泉扣缴的税款未在规定的期限内解缴入库的，均作为应扣未扣税款情形，按照有关法律、行政法规规定处理。  十五、本公告与税收协定及其相关规定不一致的，按照税收协定及其相关规定执行。  十六、扣缴义务人所在地主管税务机关为扣缴义务人所得税主管税务机关。  对企业所得税法实施条例第七条规定的不同所得，所得发生地主管税务机关按以下原则确定：  　　（一）不动产转让所得，为不动产所在地国税机关。  （二）权益性投资资产转让所得，为被投资企业的所得税主管税务机关。  （三）股息、红利等权益性投资所得，为分配所得企业的所得税主管税务机关。  （四）利息所得、租金所得、特许权使用费所得，为负担、支付所得的单位或个人的所得税主管税务机关。  十七、本公告自2017年12月1日起施行。本公告第七条第二款和第三款、第九条第二款可以适用于在本公告施行前已经发生但未处理的所得。下列规定自2017年12月1日起废止：  （一）《国家税务总局关于印发〈非居民企业所得税源泉扣缴管理暂行办法〉的通知》（国税发〔2009〕3号）。  （二）《国家税务总局关于进一步加强非居民税收管理工作的通知》（国税发〔2009〕32号）第二条第（三）项中的以下表述：  　　“各地应按照《国家税务总局关于印发〈非居民企业所得税源泉扣缴管理暂行办法〉的通知》（国税发〔2009〕3号）规定，落实扣缴登记和合同备案制度，辅导扣缴义务人及时准确扣缴应纳税款，建立管理台账和管理档案，追缴漏税”。    （三）《国家税务总局关于加强税种征管促进堵漏增收的若干意见》（国税发〔2009〕85号）第四条第（二）项第3目中以下表述：  “按照《国家税务总局关于印发〈非居民企业所得税源泉扣缴管理暂行办法〉的通知》（国税发〔2009〕3号）规定，落实扣缴登记和合同备案制度，辅导扣缴义务人及时准确扣缴应纳税款，建立管理台账和管理档案”。  （四）《国家税务总局关于加强非居民企业股权转让所得企业所得税管理的通知》（国税函〔2009〕698号）。  （五）《国家税务总局关于印发〈非居民企业税收协同管理办法（试行）〉的通知》（国税发〔2010〕119号）第九条。  （六）《国家税务总局关于发布〈企业重组业务企业所得税管理办法〉的公告》（国家税务总局公告2010年第4号）第三十六条。  （七）《国家税务总局关于非居民企业所得税管理若干问题的公告》（国家税务总局公告2011年第24号）第五条和第六条。  （八）《国家税务总局关于发布〈非居民企业从事国际运输业务税收管理暂行办法〉的公告》（国家税务总局公告2014年第37号）第二条第三款中以下表述：  “和《国家税务总局关于印发〈非居民企业所得税源泉扣缴管理暂行办法〉的通知》（国税发〔2009〕3号）”。  （九）《国家税务总局关于非居民企业间接转让财产企业所得税若干问题的公告》（国家税务总局公告2015年第7号）第八条第二款。  特此公告。  　　附件：非居民企业税务事项联络函  国家税务总局  2017年10月17日 |